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15
----------	-------

발의연월일 : 2026. 9. 2.

발 의 자 : 허영 · 박상혁 · 박용갑
박정 · 조인철 · 한정애
김영환 · 문진석 · 한민수
홍기원 · 박균택 · 이해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 추진 시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등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사비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비 검증 의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증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0조제2항 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0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
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0조(과태료) ① (생 략)	제14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 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
1. (생 략) <u><신 설></u>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 청하지 아니한 자</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